



금년부터 시행되는 톤세제도에 대해...

톤세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데 이어 12월31일 공포되어,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그간 우리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톤세제도의 국내도입이 가시화되었다. 다음은 톤세제도의 개요와 기본구조 등을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톤세제도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톤세율, 해운소득의 범위, 회계처리의 원칙, 톤세적용 신청절차 등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하위규정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과 빠른 시간내에 상기 법규 정비 절차를 마무리 하여 우리업계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실무기획단을 운영함과 아울러 모든 선사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국세청 관련 부처 등과 회계처리에 관한 실무협의를 하는 등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할 예정이다.

톤세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톤세제도의 특징,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주요내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하위 법령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일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1. 경과

- 2004. 10. 1, 조세특례제한법 정기국회 상정
- 2004. 12. 29, 국회 본회의 가결
- 2004. 12. 31, 공포
- 2005. 1. 1, 시행

2. 톤세제도의 개괄

(1) 톤세의 개념

톤세(Tonnage Tax)란 해운기업의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톤세 = 개별선박표준이익 × 법인세율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법인세율

(2) 주요국의 톤세제 도입 현황

현재 한국을 비롯하여 네덜란드,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벨기에, 인도, 미국 등이 톤세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본, 뉴질랜드, 파키스탄, 러시아, 대만 등의 국가들도 톤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톤세제도의 특징

현재까지 도입된 각국의 톤세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톤세는 영업이익이 아닌 운항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정이익(Notional Profit)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톤세는 선박의 순톤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출되지만 여기에 다시 법인세법을 적용(톤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다시 법인세율을 곱하여 법인세를 산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점에서 는 일종의 변형된 법인세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톤세는 해운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이를 선택한 해운기업에만 적용된다. 즉, 톤세는 강제로 적용하지 않으며, 해운기업은 법인세와 톤세 중 유리한 세제를 선택할 수 있다.

셋째, 톤세는 확정세이다. 산출된 톤세는 세전이익 축소를 위한 감가상각, 손실이월, 투자금액 공제, 특별이익 유보, 그룹간 손실상계 등 일체의 상계가 허용되지 않으며 세액감면조치도 없다. 또한, 기업의 결손(적자) 발생시에도 정해진 톤세는 내야 한다. 이는 톤세가 이익의 규모를 무시하고 부과되는 확정세이기 때문이다.

넷째, 조세부담 예측이 가능하다. 톤세는 운항선박의 규모와 운항일수에 따라 납세부담액을 예측할 수 있다.

다섯째, 환-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외화부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해운업의 특성상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외화환산이익 발생시 기업은 많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톤세제도 하에서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 이는 톤세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법인세 체제에서는 결손금 이월 등의 세무 조정으로 법인세 부담액을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일곱째,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 법인세 체제하에서는 해운업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절감을 위해 해운시황에 관계없이 투자를 감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영업이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정해진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이러한 부담이 해소된다. 따라서, 톤세를 선택한 기업은 해운시황을 예측하여 적시에 적절한 투자를 할 수 있다.



(4) 톤세는 과연 법인세보다 유리한가?

“톤세제도가 법인세 제도보다 유리한가?” 하는 것은 톤세제도와 관련해 가장 많은 관심을 초래하는 사항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톤세제도는 법인세제보다 유리하다. 다시말해, 이익이 많으면 많은 기업일수록 톤세제도가 세금부담액수에 있어서 법인세제보다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법인세제하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그리고, 이익의 규모에 비례하여 세금이 부과되며, 손실발생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톤세제도하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에 의해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가 어느정도 결정되었다. 향후 시행령 개정 등 세부 내용이 추가로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 그리고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톤세제도의 기본구조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1) 적용업종

톤세제도는 『외항화물운송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만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연안 운송업을 영위하는 내항선사는 톤세를 선택할 수 없다.

(2) 적용선박

톤세는 『정기·부정기 외항화물선』 및 『정기·부정기 외항여객선』에만 적용된다. 또한 톤세기업이 소유선박을 대신하거나, 국내외 선박을 용선하는 경우에도 톤세가 적용된다.

(3) 적용톤수

톤세는 국제톤수증서(International Tonnage Certificate)상의 『순톤수(Net Tonnage)』가 적용된다

●순톤수 : 선박의 총톤수에서 선원실, 기관실 및 벨러스트 탱크 등 화물이나 여객에게 관계없는 장소를 제외한 톤수로써, 여객과 화물의 수송능력을 표시하는 지표이며, 톤세, 항세, 안벽 사용료 및 등대 사용료 등 각종 세금이나 수수료의 부과 기준이 됨

(4) 톤세기업의 요건

톤세는 외항해운선사가 2년 미만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적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용선운항순톤수)」가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기준운항순톤수)」의 5배 이하인 기업만이 선택할 수 있다.

- 용선운항순톤수 : 2년 미만 외국적용선 선박의 순톤수×연간운항일수
- 기준운항순톤수 : 기준선박의 순톤수×연간운항일수
- 기준선박의 범위: 소유선박 + (국적외항선사 소유 2년이상 용선)

국적 외항선사 소유 2년이상 용선을 기준선박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확정됨

(5) 톤세적용기간

톤세는 5년단위로 적용된다. 따라서, 톤세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은 5년간 법인세제를 선택한 것과 같으며, 5년후 다시 톤세와 법인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참고로, 금년부터 톤세제도가 시행된 우리나라의 1차 톤세적용기간은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2005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이다

(6) 톤세기업 요건의 상실

톤세기업이 톤세적용기간(5년) 동안 2회 톤세기업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 상실한 첫회부터 톤세기업의 자격을 상실하며, 상실한 기업은 소급하여 법인세를 내야한다. 또한, 잔여기간이 끝난후 추가 5년간은 톤세를 선택할 수 없다.

●톤세기업이 톤세적용기간중에 톤세기업의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잔여기간+5년」간 톤세제도 선택이 금지된다.

(7) 적용대상 소득

톤세는 해운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므로, 톤세기업이라 하더라도 비해운소득은 현재와 같이 법인세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톤세기업의 법인세는 『톤세+법인세』인데, 이 경우, 법인세에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톤세와 상계하여 톤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분류기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에 있으나, 해운업계와 많은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운기업의 무역업, 선박관리업, 선상의 카지노 사업, 선상의 면세점 운영 등으로 인한 소득이 대표적인 비해운소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8) 톤세의 산출

톤세는 개별선박표준이익에 법인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은 선박의 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톤세율), 운항일수, 사용율 등을 차례로 곱하여 산출한다. (톤세 = 개별선박표준이익×법인세율,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톤당 1운항일이익×운항일수 ×사용율)

(9) 해운소득의 범위

해운소득의 범위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 중이며, 2005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확정될 예정이다.

해운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면 비해운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법인세를 내야한다. 따라서, 해운 기업에게는 해운소득의 범위가 확대되면 될수록 톤세로 대체되는 소득이 늘어나므로 유리하다.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되고 있는 해운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해상운송활동

② 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 해상운송활동을 위해 불가피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

다. 해운업 영위에 필요한 직원의 모집·교육·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 및 폐기와 관련한 활동

마. 선박의 매각. 다만,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이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의 매각손익은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 별 안분하여 비율에 따라 각각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한다.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복합운송활동

사.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및 지급이자. 다만, 투자활동(채권투자 및 1년 이상 장기저축예금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제외

아.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자.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이 또는 차손

차. 해운활동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해운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의 변동, 차입금의 환율변동 및 선박 연료유 등 해운 활동 관련 주요 원자재 시장 가격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하는 파생상품

카. 가목 내지 차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활동

(10) 공동운항

Space Charter, Slot Charter, 선복 Pool 등 공동운항 참여 기업은 당해 공동운항 사업의 선복참여비율에 비례하여 톤세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당해 공동운항 참여선박의 전체톤세를 산출한 다음 참여비율(사용율)을 곱하여 톤세를 산출하면 된다.

(11) 인수·합병·분사

법인의 합병, 인수시 인수 또는 합병법인이 톤세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속 톤세제도를 적용한다. 법인이 분사한 경우 분사법인이 톤세요건을 충족하면 신규로 톤세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2) 시행일

톤세제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4. 톤세기업의 회계처리의 원칙

(1)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상계금지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톤세)과 통산할 수 없다. 즉, 톤세와 비해운소득부문의 법인세를 상계하여 톤세를 감면 받을 수 없다.

(2) 세액공제 등의 적용배제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조약·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한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톤세와 원천징수 세액의 공제 배제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톤세의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이월결손금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 적용을 받기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톤세선택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톤세적격기업 자격의 상실시 회계처리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를 적용받고 있는 법인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톤세적용기간) 동안 톤세기업 적격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 최초로 위반한 사업연도부터 당해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의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기간은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소급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회계를 하여야 한다.

(6) 중간예납세액의 처리

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의 적용기업이 해운소득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톤세는 확정세이지만 납부방식은 현행 법인세법을 준용한다. 따라서 톤세를 중간예납한 경우 총 납부해야할 톤세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처리한다.

(7) 감가상각

톤세기간중 톤세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장부상 감가상각은 계속 진행하되 동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불산입한다.(소멸처리함)

톤세적용기간 중에도 장부상 감가상각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당해 톤세기업이 법인세로 복귀하면 감가상각을 계속해야 함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8) 톤세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사용된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한 처리

선박을 포함하여 해운활동에 사용된 자산이 톤세 적용기간과 법인세 적용기간에 걸쳐 연속하여 사용된 경우, 당해 자산의 매각차익은 법인세 적용기간과 톤세적용 기간의 사용비율에 따라 각각 법인세와 톤세가 적용된다.

(9) 구분경리, 기타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10) 톤세기업의 중단시 회계의 처리

과세표준계산특례적용기간(톤세적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요건 위반으로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에도 계속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의 금액을 계산한다.(법인세법에 의해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11) 손금의 회계처리

과세표준계산특례 손금에 대하여 비해운소득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순금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한다.

5. 제반절차

(1) 톤세의 적용 신청기간

톤세는 다음의 기간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5년 1월1일 이전에 설립된 외항해운기업은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3월31일까지, 2005년 1월1일 이후 설립하는 외항해운기업은 최초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

(2) 톤세적용기간의 종료에 따른 톤세제도의 재선택

톤세적용기간(5년)이 종료된후 톤세적용을 다시 희망할 경우 재신청하여야 하며, 재신청하지 않은 경우 5년후에 신청가능하다. 이 경우 5년간은 법인세제가 적용된다.

(3) 톤세의 적용 신청 절차

톤세의 적용신청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인의 기준선박 및 용선선박의 순톤수 및 운항일수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용선계약서, 국제톤수증서 등)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톤세 적격기업 요건의 확인

톤세기업은 톤세 적격기업 요건의 위반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톤세적용기간동안 매년 1회 해양수산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톤세기업의 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합한 경

우에 확인서를 발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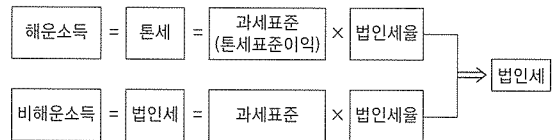
용선운항 순톤수와 기준운항 순톤수의 비율이 톤세기업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확인서를 발급한다.

6. 톤세의 산출예시

이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톤세제도를 개략해 보았다. 다음은 해운기업이 톤세를 선택할 경우의 선박별 톤세부담액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나, 아직, 톤세율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영국의 톤세율, 톤세율 상한선이 30원 일 경우의 톤세부담액을 알아보기로 한다. 참고로 톤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가. 톤세기업의 법인세 산출

법인세 = 톤세 + 비해운소득의 법인세



나. 톤세산출 예시

순톤수 1,000톤, 10,000톤, 25,000톤, 50,000톤 선박의 톤세산출

- 영국 톤세율에 의한 톤세산출(예시)
- 상한선을 30원으로 할 경우의 톤세산출(예시)

1) 영국 톤세율에 의한 톤세의산출

가. 영국톤세율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	순톤수x12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	12,000원+1,000톤을 초과하는 순톤수x9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	93,000원+10,000톤을 초과하는 순톤수x6원
25,000톤 초과	183,000원+25,000톤을 초과하는 순톤수x3원



나. 선박별 영국톤세율에 의한 톤세의 산출(예시)

선박의 크기(순톤수)	톤 세
1,000톤	$(1,000\text{톤} \times 12\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25\% = 1,095,000\text{원}$
10,000톤	$\{[12,000\text{원} + (9,000\text{톤} \times 9\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25\% = 8,486,250\text{원}$
25,000톤	$\{[93,000\text{원} + (15,000\text{톤} \times 6\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25\% = 16,698,750\text{원}$
50,000톤	$\{[183,000\text{원} + (25,000\text{톤} \times 3\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25\% = 23,542,500\text{원}$

- ※ 주 : 1. 톤세율 : 영국톤세율을 적용
 2. 톤 세 : 개별선박표준이익의 법인세율(25%)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3. 대상선박 모두 소유선 가정(365일 운항, 사용률 100% 가정)

다. 1,000 NT, 10,000 NT, 25,000 NT, 50,000 NT 4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사의 영국톤세율에 의한 연간톤세 합계: 49,822,500원

- 1,000톤 : 1,095,000원
- 10,000톤: 8,486,250원
- 25,000톤: 16,698,750원
- 50,000톤: 23,542,500원

2) 톤세율 상한선을 30원으로 할 경우의 톤세 산출(예시)

가. 톤세율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	순톤수×30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	30,000원+1,000톤을 초과하는 순톤수×23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	237,000원+10,000톤을 초과하는 순톤수×15원
25,000톤 초과	462,000원+25,000톤을 초과하는 순톤수×8원

나. 톤세 상한선이 30원일 경우 선박별 톤세의 산출(예시)

선박의 크기(순톤수)	톤 세
1,000톤	$(1,000\text{톤} \times 30\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25\% = 2,737,500\text{원}$
10,000톤	$\{[(30,000\text{원} + (9,000\text{톤} \times 23\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25\% = 21,626,250\text{원}$
25,000톤	$\{[(237,000\text{원} + (15,000\text{톤} \times 15\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25\% = 42,157,500\text{원}$
50,000톤	$\{[(462,000\text{원} + (25,000\text{톤} \times 8\text{원})) \times 365\text{일}] \times 25\% = 60,407,500\text{원}$

- ※ 주 : 1. 톤세율 : 상한선을 30원으로 하고, 각 구간별 톤세율 25%씩 체감
 2. 톤 세 : 개별선박표준이익의 법인세율(25%)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3. 대상선박 모두 소유선 가정(365일 운항, 사용률 100% 가정)

다. 1,000 NT, 10,000 NT, 25,000 NT, 50,000 NT 4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사의 연간톤세 합계: 126,928,750원

- 1,000톤 : 2,737,500원
- 10,000톤: 21,626,250원
- 25,000톤: 42,157,500원
- 50,000톤: 60,407,500원

7. 톤세율

톤세제도의 핵심이며 해운업계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한 톤세율은 해운기업의 톤세부담액과 직결된다. 해운업계는 가능한 한 톤세율이 낮게 책정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해운업계와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톤세율이 최소한 경쟁국들의 톤세율보다는 낮게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해운업계의 바램이다. 또한, 톤세율은 향후로도 필요할 경우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보다 뒤늦게 톤세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톤세율을 참조하여 자국의 톤세율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납부한 법인세는 총 2,700억원으로

써 많은해에 600억원에서 적은해에는 40억원까지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매년 평균납부액은 270억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톤세율은 이 수치를 참고하여 재정경제부가 결정할 것이다.

8. 시사점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톤세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나라의 톤세율은 최소한 유럽의 톤세율보다 낮게, 즉, 유럽국가의 해운기업보다 경쟁우위에 설 수 있도록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우리나라보다 톤세제도를 나중에 도입할 여러 경쟁국들에게 우리나라보다 톤세율을 낮게 도입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국제적으로 톤세제도를 통해 자국해운산업을 간접지원하는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추세는 향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해운조세경쟁은, OECD에서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 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

유해조세경쟁이란 각 나라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조세부담을 경쟁적으로 경감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 공정경쟁의 국제 상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톤세의 경우 처음 도입한 국가와 나중에 도입한 국가간에 세부담을 경감하는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유해조세경쟁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OECD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OECD는 일단 톤세제도가 유해조세경쟁은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하였다.

9.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톤세제도 기본구조를 개략해 보았다. 그러나,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톤세율, 해운소득의 범위, 톤세제 신청절차 등을 정하기 위한 추가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톤세제도는 법인세의 개념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법인세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어 법인세제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제국이 톤세제도를 도입한 배경을 살펴보면 극심한 국제경쟁에서 뒤떨어져 점점 쇠퇴하고 있는 자국의 해운산업 지원방법을 고심한 결과로 탄생한 산물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유럽제국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해운기업이 바다라는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는 한, 어떤 나라도 경쟁국의 지원정책이 자국의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우리나라가 톤세제도를 도입한 당위성이기도 하다.

끝으로, 톤세제 도입 실무기획단에 참여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로도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0. 톤세제도에 관한 FAQ

(1) 톤세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1차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 2005. 1. 1부터 시행되며, 2005. 1. 1~2009. 12. 31 까지가 1차 적용기간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 톤세선택을 희망하는 선사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6년 3월 31까지 톤세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2) 2005. 1. 1부터 선사가 반드시 관리해야 할 사항은?

⇒ 용선의 경우 국제통수증서사본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

⇒ 용대선계약을 명확하게 하여 용대선일자가 입증되어야 함.

(용선 선박의 톤세 = 용선선박의 순톤수 × 용선일수)

⇒ 상기 서류는 톤세 신청 또는 세무서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기 세무감사 시에도 제출하여야 함.

(3) 톤세는 매년 신고하여야 하는가?

⇒ 법인세 납부 신고시 매년 신고하여야 함.

⇒ 톤세적격기업의 확인을 위해 매년 해양수산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도 신고를 하여야 함.

(4) 소유선박을 대신한 경우에도 톤세를 내야 하는가?

⇒ 대신한 경우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모두 동일한 톤세를 내야 함.

⇒ 당해선박은 톤세를 2번 내야 함.

(5) 톤세적격기업의 요건은?

⇒ 기준선박 연간운항순톤수 × 5 > 2년이하의 기간으로 용선한 외국적 용선선박 연간운항순톤수

- 연간운항순톤수 : 선박의 순톤수 × 운항일수
- 사 선 : 순톤수 × 365일
- 용·대선 : 순톤수 × 용·대선일수
- 기준선박 : 소유선박(BBC HP포함) + (?)

(6) 2005. 1. 1 이전에 발생한 국제선박 양도 차익 손금산입금액(80%)으로 2005. 1. 1 이후 매입한 선박은 감가상각비 중에서 상기 손금산

입금액은 익금에 산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해운 소득과 비해운소득중 어느소득으로 보아야 하는가?

⇒ 당해 익금은 비해운소득에 해당됨. 톤세 적용 이전에 발생한 소득이며, 법인세 부과 대상임.

(7) 공동운항, Space/Slot Charter의 톤세계산 방식은?

⇒ 공동운항선박 1척의 톤세과세표준을 먼저 산출한 다음 공동운항 참여비율에 따라 사용율을 적용하여 톤세를 산출하여야 함.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8) 공동운항, Space/Slot Charter 이외의 용선(예를들어 개별 컨테이너 화물의 구간 위탁 수송 등)의 톤세계산 방식은?

⇒ 위탁수송 선박의 Design Capacity 및 국제통수증서를 확보해야 하며, 수송계약도 명확하게 하여 용선한 순톤수 비율 및 용선일자가 서류로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9) 이자소득은 해운소득인가 비해운소득인가?

⇒ 해운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해운 소득이며 투자활동으로 인한 이자소득은 비해운 소득임.

⇒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며, 비해운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는 법인세법이 적용됨.(원천징수후 비해운소득으로 처리하여 법인세법 적용)

(10) 외화환산손익, 외환차손익은 해운소득인가, 비해운소득인가?

⇒ 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환산

손익, 외환차손익만 해운소득으로 인정됨.

(11) 외항선박이 해운법 제26조의 2에 의해 일시적인 자격변경을 통해 국내항간에서 수출입 화물이 아닌 국내항간 이동 화물을 운송했을 경우 해운소득으로 볼수 있는가?

⇒ 톤세제도는 외항해운선사의 수출입화물 운송에만 적용되므로 이경우의 소득은 해운소득이 아님.

⇒ 따라서, 비해운소득으로 처리하고 법인세 부과 대상임. 다만, 환적하기위한 수출입화물의 국내항간 운송은 해운소득에 속함.

(12) 공동운항의 경우 선박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지 않고 화물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때 선박별 할당순톤수는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 선박별로 계약을 하거나, 또는 연간 전체운항실적을 가지고서 선박에다 역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국세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13) 컨테이너의 용선계약은 TEU 단위로 이루어 지는데 이때 할당순톤수의 계산 및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용선한 TEU가 선박당 총 TEU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용선비율, 즉, 사용률이며 그 비율을 당해 선박의 순톤수에 곱하여 할당순톤수를 구해야 함

예)) 총 선복량이 6000TEU이고, 순톤수가 50,000톤인 선박에서 2,000TEU를 용선하였을 경우 사용률은 33.3%(2,000TEU × 6,000TEU=33.3%)이며, 당해선사의 일일 할당순톤수는 16,650 NET TON(50,000NET TON×33.3%)임
⇒ 또한, 컨테이너의 용선계약시 당해선박의 국제톤수증서 외에 총TEU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반드시 확보해야함

(14) 톤세 적격기업 자격을 2회 위반하면 첫 번째 위반연도부터 소급하여 법인세가 적용된다는 구체적 의미는 ? 또한, 이 경우 과징금이 부과 되는가?

⇒ 5년 동안 2회 톤세기업의 자격을 위반하면 『위반한 첫회부터 잔여기간 + 5년』간 톤세적용이 중단됨. 다시말해, 『잔여기간 + 5년』간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됨.

⇒ 그러나, 톤세기업 요건을 위반한 것이 과징금 부과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톤세기업 자격 상실시기 및 톤세선택 금지기간 예시

법인세 적용기간	톤 세					법인세 적용기간
	톤세선택 1년차	톤세선택 2년차	톤세선택 3년차	톤세선택 4년차	톤세선택 5년차	
사례①	○	×	○	○	×	9년
사례②	○	○	○	×	×	7년
사례③	○	○	×	×	○	8년

※ 주 : ○ : 톤세 적용요건 충족, × : 톤세 적용요건 상실

- 사례①의 경우
 - 톤세회사 자격상실시기 : 톤세선택 2년차
 - 톤세선택 금지기간 : 9년 (잔여기간 4년+5년)
- 사례②의 경우
 - 톤세회사 자격상실시기 : 톤세선택 4년차
 - 톤세선택 금지기간 : 7년 (잔여기간 2년+5년)
- 사례③의 경우
 - 톤세회사 자격상실시기 : 톤세선택 3년차
 - 톤세선택 금지기간 : 8년 (잔여기간 3년+5년)

